

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

의안 번호	9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에너지공사는 롯데마트 소유 민간 부지를 활용하여 약 4.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- 나. 이를 위해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 허가,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진행할 계획임
- 다.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공공-민간 협력 모델로 롯데마트 전국 21개 지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특성상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이 요구되며, 발전소의 장기 운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
- 라.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에 의거 서울에너지공사의 롯데마트 태양광 부지 발전사업 현금출자를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경과

- 1) 서울에너지공사, 롯데마트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: '19. 1.10

- 2) 서울에너지공사, 롯데마트 설치공간 사용허가서 체결 : '19. 3.13
- 3) 기초조사 타당성 용역 준공 : '19. 3.29
- 4)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: '19. 5.14
- 5) 예비, 본 투자심사 승인(적정): '19. 6. 3
- 6) 제16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출자 시행(안) 의결: '19. 6.20

나. 출자개요

1) 출자대상 기관

- 가) 기관명칭 : (가칭) 서로서로햇빛발전소 주식회사
- 나) 출자금액 : 867백만 원(지분율 : 자기자본의 약 51%)

2) 주요사업

- 가) 대표자 선임, 주주총회 개최 등 특수목적법인 운영
- 나)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다) 전력판매 및 수익금 적립, 관리

3) 출자 필요성

- 가) 동 사업 발굴 및 개발을 주도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의결권 확보
- 나)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건전성 기여(사업기간(20년) 동안 배당수익 총 2,284백만원 예상)
- 다) 참여사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분배로 사업 위험 최소화 및 분산
- 라) 지분대비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 확보
- 마) 전력 구매사 지분참여로 REC+SMP 장기고정 계약(20년) 확보

4)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 급부

가) 출자지분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

나) 태양광 발전소 운영수익에 대한 배당수익 수취

다) 운영종료 후 특수목적법인의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이익 또는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수익 수취

5)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

가)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 매각 후 청산

나)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
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 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)

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

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
2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
3. 재원 조달방법
4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.

3) 「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(사업)

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
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
3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
4. 환경·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
5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
6.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7.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, 연구, 개발, 교육, 홍보 및 컨설팅,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사업

8.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·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·설치·운영·대여 및 양도
9.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1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

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 : 사장 방침

※ 작성자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

(팀장 최철웅 ☎ 2133-3552 / 담당 김수정 ☎ 2133-3554)

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햇빛사업부

(부장 조창우 ☎ 2640-5320 / 담당 임형철 ☎ 2640-5323)